

『구미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5년 10월 8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5년 10월 12일

라. 상정일자 : 2015년 10월 20일

제19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안전행정국장 이 수 영

나. 제안이유

「구미시 시세 기본조례」를 현행 법령과 일치되게 개정하고
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준하여 조례를 정비하려는
것임.

다. 주요내용

- 타 지역에서 관내 자동차를 이전·말소 등록 시 자동차세 신고
업무 특례 규정을 신설함(안 제4조).
- 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의 범위를 규정하는 세목 일부를
조정함(안 제7조).
- 상위법의 조례 위임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하고
재정비함(법조항 축소 조정 50조→9조).

라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「지방세기본법」, 「지방세법」,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
- 「지방세법 시행령」, 「자동차등록령」

○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백 인 업

○ 본 개정조례안은

「구미시 시세 기본조례」를 현행 법령과 일치되게 개정하고,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준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임.

○ 주요 내용은

- 안 제4조에서 「자동차등록령」 제5조제2호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시 관할 이외 지역의 다른 등록관청이 처리하는 경우, 해당 자동차의 이전·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다른 등록관청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
- 안 제7조에서 「지방세기본법」 제95조제1항제1호의 성실납부자의 범위를 기존 ‘면허분등록면허세, 균등분주민세, 소유에 관한 자동차세를 제외한다’에서 ‘취득세,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소득분, 재산세,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’로 변경하였음.
- 아울러,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당초 50개 조문에서 9개 조문으로 축소하는 등 상위법에서 규정한 조례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하여 재정비하였음.

○ 검토결과

- 본 개정조례안은

「구미시 시세 기본조례」를 현행 법령과 일치되게 개정하고, 자동차 신고 업무를 타 등록관청에 위탁처리 하는 등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준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

-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